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
----------	------

발의연월일 : 2016. 10. 18.

발의자 : 최경환(국) · 김경진 · 김광수  
김삼화 · 김수민 · 김종회  
박선숙 · 박재호 · 백재현  
윤영일 · 인재근 · 정동영  
제윤경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u>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 ⑤ (생 략)  <u>&lt;신 설&gt;</u></p>	<p>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u>          -----          -----. 다만,  <u>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p>

<p><u>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u> <u>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